

의안번호	2205017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12.4.
추 계 번호	24B4628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분과위원회·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억 6,200만원, 2030년 29억 5,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9억 2,400만원(연평균 29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비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40	—	—	40	—	—	—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안 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8조)	12	12	12	12	12	—	—
분과위원회(안 11조)	3.6	3.6	3.6	3.6	3.6	—	—
표준근로계약(안 제14조)	66	—	—	—	—	—	—
지방비							
시·도위원회 등의 설치(안 12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2,940	2,940	2,940	2,940	2,940	—	—
추가재정소요	3,062	2,956	2,956	2,996	2,956	14,924	2,985

주: 1.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 등은 3년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이하 “처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처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돌봄서비스별 국공립 공급 비율 및 공급 총량에 관한 사항 2. 돌봄노동자의 상시·직접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돌봄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급(월 단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적립금, 장기근속 장려금, 교통비 등 적정 임금의 기준 및 지급 나. 돌봄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및 휴게를 위한 적정 인력의 운영 다. 돌봄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4. 돌봄노동자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등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돌봄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제도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계획 2. 돌봄노동자의 고용 또는 처우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권고 3. 돌봄노동자의 돌봄서비스별 규모·임금체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4.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임금체계의 개선 방향과 적정 임금의 수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5. 돌봄노동자의 교육 및 훈련 방향 6. 돌봄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노사 협력 지원 7. 제10조에 따른 시정 요구와 이행결과의 검토 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규정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 호의 위원수는 동수로 함(제2항) 1.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함(제3항)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함(제4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안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사전 검토를 위하여 돌봄서비스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제1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학계 전문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함(제3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검토를 마친 때에는 검토사항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제4항)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안 제12조(시·도 위원회 등의 설치)	지역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지역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해당 지역 내 돌봄노동자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3조(지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 호의 위원수는 동수로 함(제2항)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근로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역위원회는 임시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함(제3항)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4항)	
5	안 제14조(표준 근로계약)	국가 등은 돌봄서비스별 표준근로계약을 개발하여야 함(제1항) 사업주는 제1항의 표준근로계약을 사용하여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17조(적정 임금의 보장 등)	국가 등은 돌봄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돌봄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산정·공표하여야 함(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적정 임금 이상을 돌봄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제2항) 국가가 등이 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돌봄노동자의 인건비를 운영비 등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주는 전용 계좌를 지정하여 인건비를 청구하여야 함(제3항) 제3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업주는 돌봄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임금 지급 내역을 국가 등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제출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제4항) 국가가 등이 사업주가 돌봄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에 따른 임금 지급 내역과 다르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제5항)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인건비의 구분 지급, 임금의 지급 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7	안 제25조(통보 의무)	국가 등과 돌봄서비스 관리기관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찰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은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다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6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유사사례 참고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
3	안 제7조(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분과위원회)	○	• 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4	안 제12조(시·도위원회 등의 설치) 안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제정안의 조항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5	안 제14조(표준근로계약)	○	• 유사사례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산출
6	안 제17조(적정임금의 보장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 및 돌봄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한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적정 임금의 산정 등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25조(통보 의무)	—	• 미대상 — 국가 등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 제정안은 3년마다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작성
 - (유사사례)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용역예산) 4,000만원(2021년)
 - (법적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1)
 - (주요내용)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수립을 목적으로 기업 및 근로자의 근로복지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
 - (수행기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표 2]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40	—	—	40	—	8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나.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안 7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는 20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민간위원은 위원 구성 조항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19명)의 과반(10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 10명
-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는 제정안의 조항³⁾에 따라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2	12	12	12	12	6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3)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다. 분과위원회(안 11조)

- 제정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에 따라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명으로, 민간위원은 위원 구성 조항⁴⁾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4명)의 과반(3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 3명
 - 회의참석 사례금 및 회의개최 횟수는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위원회에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의 분과위원회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1개의 분과위원회가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3	3	3	3	3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3.6	3.6	3.6	3.6	3.6	18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라. 시·도위원회 등의 설치(안 제12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 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

4) 안 제11조(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학계 전문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은 위원 구성 조항⁵⁾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19명)의 과반(10명)으로 가정

- 민간위원: 10명(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 회의참석 사례금 및 회의개최 횟수는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

[표 5]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0	10	10	10	1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지방자치단체 수(D)	245	245	245	245	245	—
광역자치단체 수	17	17	17	17	17	—
기초자치단체 수	228	228	228	228	228	—
소계(E=A×B×C×D, 백만원)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마. 표준근로계약(안 제14조)

□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등이 돌봄서비스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표준근로계약서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제정안의 시행 첫해인 2026년에 수반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회

5) 안 제13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서 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하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각 호의 위원수는 동수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관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사람

[표 6]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2021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1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2024년 5월 23일 접속

- 제정안에 따라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분과위원회·지역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0억 6,200만원, 2030년 29억 5,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49억 2,400만원(연평균 29억 8,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비							
돌봄노동자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40	—	—	40	—	—	—
돌봄노동자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안 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8조)	12	12	12	12	12	—	—
분과위원회(안 11조)	3.6	3.6	3.6	3.6	3.6	—	—
표준근로계약(안 제14조)	66	—	—	—	—	—	—
지방비							
시·도위원회 등의 설치(안 12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2,940	2,940	2,940	2,940	2,940	—	—
추가재정소요	3,062	2,956	2,956	2,996	2,956	14,924	2,985

주: 1. 추가재정소요는 국비 및 지방비를 합산한 금액임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